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0회 임시회

검토보고서

2024. 9. 2.(월)

순서	검토안건	제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4. 8. 16.
- 회부일 : 2024. 8. 19. (의안번호 : 24-98)

2. 제안이유

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,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폭넓게 위촉하기 위해 구성인원을 확대하고,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재난의 정의(안 제2조)
- 안전관리위원회 구성(안 제8조)
-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(안 제11조)

-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직 개편사항(2024. 2. 1. 자) 반영 등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제11조, 제16조, 제18조, 제25조
「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」 제23조, 제29조
- 입법예고 : 2024. 7. 11. ~ 7. 31. 결과: 의견 없음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

5.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,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비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인력 및 예보·경보 시스템 강화,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-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 - 제2조 제2항 “자연재난((폭염 및 한파를 포함한다)과 나목의 사회재난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”이라는 표현이 “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”로 간소화된 복잡한 용어를 보다 명료하게 정리한 것으로 행정문서의 간결성을 높이려는 의도임.

-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4항에서 재난 관련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인원이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유고 시 재난상황에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전문가 인재풀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판단됨.
 - 제17조 제5호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의 발령 신설조항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여,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.
 - 제41조 제2항 “상황실은 재난대책 사무실에 설치하고”라는 기존 조항을 “상황실 및”으로 변경하면서 상황실의 운영 장소를 재난대책 사무실 외의 다른 장소로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함. 또한, “본부장”이 “구청장”으로 변경됨에 따라 책임자의 명칭을 보다 일관성 있게 정비함.
 -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“그 소관”을 “매년 그 소관 재난 및”으로 수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주기적인 보고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, “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”로 표현을 변경하여 관리기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.
- **법적 타당성:**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으며, 기존 조항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**책임성 강화:** 구청장의 책임 명시와 관리기관의 연간 보고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책임성이 보

다 확보하여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인 행정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**재난 관리 체계의 강화:** 재난 예보 및 경보 발령과 같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,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**행정의 효율성 제고:** 용어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, 재난 관련 업무의 명확성을 높여 재난 대응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.
- **재난 대응 인력 강화:** 위원회 구성 인원의 확대는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, 재난 관련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**상황실 운영의 유연성 확보:** 상황실 운영에 대한 규정을 유연하게 변경하여 재난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장소에서 상황 대응이 가능해졌으며, 실무 담당자의 대응 역량도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됨.
- **재난 및 안전관리의 체계적 관리:**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보고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, 관리기관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체계적인 재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.

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

강화하기 위하여 예보·경보 시스템의 신설, 상황실 운영 규정의 유연성 확보, 위원회 구성 인원의 확대 등을 포함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하였으며, 기존 조항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대응 체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개선하고 재난 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재난 및 안전관리는 평상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개정된 사항외의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임.
- 또한 요즘 전기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령의 수반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의 선제적 투입도 고민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[시행 2024. 7. 17.] [법률 제20030호, 2024. 1. 16.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- 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-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·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
- 다. 삭제
2. “해외재난”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.
3. “재난관리”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4. “안전관리”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 - 4의2. “안전기준”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,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, 안전기준의 분야,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5.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- 가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
- 나.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5의2. “재난관리주관기관”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6. “긴급구조”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, 응급처치,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.
7. “긴급구조기관”이란 소방청·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. 다만,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·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.
8. “긴급구조지원기관”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·시설 및 장비,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.
9. “국가재난관리기준”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·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.
- 9의2. “안전문화활동”이란 안전교육, 안전훈련,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- 9의3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10. “재난관리정보”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, 동원가능 자원정보, 시설물정보, 지리정보를 말한다.
- 10의2. “재난안전의무보험”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(共濟)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.
11. “재난안전통신망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

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·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.

12. "국가핵심기반"이란 에너지, 정보통신, 교통수송, 보건의료 등 국가 경제, 국민의 안전·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.
13. "재난안전데이터"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.

제11조(지역위원회)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
2. 제24조또는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- 2의2.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(시·군·구위원회는 제외한다)
3.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
4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5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위원회와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,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삭제

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

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군·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8조(재난안전상황실) 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·전파, 상황관리,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행정안전부장관: 중앙재난안전상황실
2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: 시·도별 및 시·군·구별 재난안전상황실

② 삭제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④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제2호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

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,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

제25조(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·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·군·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·군·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·군·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고,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「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」

[시행 2024. 7. 31.] [대통령령 제34731호, 2024. 7. 23., 타법개정]

제23조(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(이하 “재난안전상황실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·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·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
2.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·관리체계
3.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② 행정안전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29조(시·도안전관리계획 및 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) ①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시·도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시·도안전관리계획”이

라 한다)과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은법 제22조 제8항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
④법 제24조 제2항및제25조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
2.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
3.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